

부산직할시남구주거환경기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용조례안 심사 보고서

92. 12. 14

도시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2년 11월 28일
- 다. 상정 일자 :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
(1992년 12월 11일)

2. 제안 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축과장 김찬조)

가. 제안 이유

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기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기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나. 주요 골자

○ 세 입

-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 수익금
- 국.시비 보조금
- 국민주택 기금등으로부터 차입금
- 응자금 상환 원리금, 주택등의 분양 수입금 및 임대료 수입
- 타회계 전입금

○ 세 출

- 공공시설 정비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
- 주택 건립, 개량 용자금
-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
- 기타 차입금 상환
- 공법인에 대한 출자
- 소관 재산의 관리 및 사무관리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노영규)

-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정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,
-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특별회계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회계 구분에 따라 세입의 재원과 세출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, 답변 요지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요지	답변요지
김봉곤 위원	건축과장 김찬조	· 이 조례안을 오늘 통과 안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?	· 망미1지구가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용호1지구가 지정 고시되는등 내년사업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
이계일 위원	"	· 망미1지구외 3개소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구제정 형편으로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한 답변	· 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설정비, 도로개설, 하수도시설등 주택개량 자금용자등 회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서 해결될 것임.

질의위원	답변 공부원	질의요지	답변요지
이기광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시조치법 제12조 2항에 대해 설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시조치법은 89년 4월 1일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이 법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부여 된 토지의 관리,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관리 처분 규정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음.
이기광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례안 제3조의 4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란 조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· 공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해 설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금이 부족할시 일반회계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며, 6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말함. · 부산시장은 공법인(주택 공사등)으로 하여금 주거 환경개선을 대량 위탁시킬 수 있으며,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주민에게 혜택이 많으며 수익금은 지방자치 단체로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됨.
이계일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례안 제3조 3항의 국민 주택 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설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 시에 요청하면 중앙부서에 자금을 요청 해서 받는 경우이며 예를들면 주택용자금을 받는 것 등임.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요지	답변요지
이기광 위원장 이계일 위원장	도시국장 박종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비, 국비로 대출받은 것을 갚기위해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갚는것에 대해 설명 ·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지원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대해 설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산을 편성할때 일반회계에 타회계 전출금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회계의 차입금이 필요 할때는 추경을 요구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이 조정이 들어간 것으로 사료됨. · 각종 특별회계 운영은 거의 일반회계 예산을 차입하여 쓰고 넘기고 하기 때문에 필요할때 이런 조항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전출금을 많이 사장해 놓는 그런 관례는 거의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.